

18.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도시주택본부장)
- 회부일자 : 2007년 11월 6일
- 심 사
- 대구광역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8. 2. 21) : 원안가결

2. 주요골자

-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공고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근거법령

- 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4.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주택본부장 박대녕)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3.24) 개정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 되어
-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규정과 이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주요 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 등의 분양 공고를 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공고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및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였음.

5. 검토보고 요지(보고 : 전문위원 하재열)

본 조례 개정안은,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2005년 3월 24일 개정 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공동주택 등의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도 2005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공동주택 등의 분양받는 자에게 관련된 부담금 부과·징수 공고의 절차와 방법, 과태료의 부과조항(안 제2조, 3조, 6조, 7조)을 법령에 맞게 삭제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한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리하는 것이며,
 - 기존조례 제2조부터 제3조, 제6조부터 제7조에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조항과 과태료의 부과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음.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2007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임.
그동안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 하다보니 미수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변경되면서 부담금 징수 조건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용지 확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이 2005년 3월부터 개정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 학교용지부담금을 기 부담한 사람들에게 환급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은? ○ 기 납부된 권리와 관련하여 용지부담금은 징수후에 교육청에 교부하지 않고 시 산에 편입하여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지적인대로 신속히 조치하겠음. ○ 환급문제는 일정규모이상 아파트에 대해 분양시 부담한 것으로 일부는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부측에서는 미납한 것으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에 있음. ○ 예 알겠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9. 참고자료

- 의안본문 : 붙임.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제3조·제6조·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발행번호 제 호		발행번호 제 호		발행번호 제 호	
납부 자	주소	납부 자	주소	납부 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세입과목 (관) (항) (목)		세입과목 (관) (항) (목)		세입과목 (관) (항) (목)	
건명	학교용지부담금	건명	학교용지부담금	건명	학교용지부담금
금액		금액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p>위 금액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수입 일부인</p> <p>년 월 일</p> <p>○○구청장·군수</p>		<p>위 금액은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은행 ○○지점</p> <p>수입 일부인</p> <p>○○구·군 징수관</p>		<p>위 금액을 영수합니다.</p> <p>년 월 일</p> <p>수입 일부인</p> <p>○○은행 ○○지점</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대구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방법)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간신문에 게재 2.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게시 3.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게시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p> <p>제3조(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차)① 개발사업 등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양공고시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분양계획 등 승인권자는 분양계획·입주자모집계획 공고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p> <p>③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공고를 할 경우 공고문과 분양안</p>	<p>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p> <p>-----.</p> <p><삭 제></p> <p><삭 제></p>

〈관계 법령〉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삭제 2005.3.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공고) 〈삭제 2005.12.14〉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④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05.12.14>